

제278회 임시회
2009. 3. 27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



건설문화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2009. 3. 27.

건설문화위원회

1. 심사 경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9년 3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2009년 3월 10일

상정일자 :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9. 3. 24 :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균형발전국장 박 범 수)

제안 이유

○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, 훼손된 경관은 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- 경관계획의 내용 (안 제2조)
- 경관사업 대상·사업계획서(안 제3조, 안 제4조)
- 경관위원회 운영(안 제5조)
 - 경관위원회 운영은 충청북도건축위원회에서 기능 대행
-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(안 제6조)
- 공동위원회 운영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문화전문위원 운영 해)

- 충청북도 경관조례안을 검토한바
- 경관법 및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
-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훼손된 경관의 복원, 새로운 경관의 개성있는 창출을 통하여 충청북도 전역을 아름답고 효율적인 경관을 창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
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참고적으로 강원, 전남, 경남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 등 8개시도 제정운영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이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경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관법」 및 「경관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경관계획의 내용) 「경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경관현황 종합분석도(1/25,000)
2. 경관기본구상도(1/5,000)
3. 경관계획도(1/5,000)
4. 경관 투시도 및 시뮬레이션
5. 현황사진

제3조(경관사업의 대상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「경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수변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
2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

제4조(경관사업 사업계획서)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비 산출근거
2. 사업비 조달방안
3. 유지관리비 조달 방안
4. 사업계획 관련 도서

제5조(경관위원회의 운영) 법 제2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영 제15조

에 따라 충청북도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6조(경관위원회의 심의·자문대상)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
2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

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
2. 경관사업의 승인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
3. 충청북도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경관사업
4.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
5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

③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동위원회의 운영)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며,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.

⑤ 공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, 경관사업 시행자,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

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경관법

제13조 (경관사업의 대상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경관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
2.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
3.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
4. 지역의 역사·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
5.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
6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경관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3조 (경관위원회의 설치)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. 다만, 경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건축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.

제24조 (경관위원회의 기능)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
2. 경관계획의 승인
3. 경관사업의 승인
4. 경관협정의 인가
5.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
2.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3.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
4.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
5.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□ 경관법시행령

제3조(경관계획의 내용)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·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
2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(이하 "경관사업"이라 한다)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(이하 "경관협정"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경관의 보존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제8조 (경관사업 사업계획서)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의 목표
2. 사업주체
3.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
4. 경관계획과의 연계성
5. 유지관리 방안
6. 사업비용
7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제1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"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. <개정 2008.6.20>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
2.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
3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
4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
5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

6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

제16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「건축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면 공동위원회(이하 "공동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「건축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,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.

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(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)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
2.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
3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

□ 충청북도건축조례

제4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2. 6>

②위원장은 균형발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00. 7. 12, 2001. 9. 13, 2006. 12. 22, 2008. 7. 1>

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된다. 다만,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.<개정 99. 7. 30, 2006. 6. 30, 2009. 2. 6>

1.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
3.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
4.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위원

④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,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<신설 2006. 6. 30>